



2026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시행지침

2026. 1.

경 기 도
(농업정책과)

《 주 요 내 용 》

구분	기존(2025년)	변경(2026년)
사업명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지원 대상	경기도내 거주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여성농어업인으로 가구당 1인 지원	경기도내 거주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여성농어업인으로 가구당 1인 지원
지원 규모	9,166명(여성농어업인)	11,000명(여성농어업인)
지원 예산	1,833백만원 (도 440, 시군비 1,027, 자부담 366)	2,200백만원 (도 528, 시군비 1,232, 자부담 440)
신규 추가 사항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대상자 중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 중복 미지급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대상자 중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 및, 농어민기본소득(연천군) 중복 미지급
주관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 : 농업정책과 - 여성어업인 : 해양수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 : 농업정책과 - 여성어업인 : 해양수산과
NH농협은행 경기본부 의견 반영	대상자 변경(수정) 신청서 추가 (별지 제12호)	-

2026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기도 농업정책과, 경기도 해양수산물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기도청	농업정책과	팀장 한현수 주무관 윤가원	031-8008-4413 031-8008-4448
	해양수산물과	팀장 박철현 주무관 허윤재	031-8008-4530 031-8008-4527
NH농협은행 경기본부	현장지원단	단장 최병민 과장 김혜진	031-220-8730 031-220-8735

※ 사업지침은 사업 시행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I 사업개요

1. 목적

- 보건·복지·문화비용 지원으로 여성농어업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여성농어업인의 사기진작 및 직업적 자긍심 고취

2. 관련법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3. 추진방향

- 전업 여성농어업인의 신청 및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보건·복지·문화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 지원
- 대상자 적격여부 사전 검증(선정) 및 전반적인 수혜자 체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철저

II

세부추진계획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보건·복지·문화 분야에 이용하는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내에 실제 거주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여성농어업인 (기준 : 별표 1 참조)
- 사업량/총사업비 : 11,000명 / 2,200백만원(도비 528, 시군비 1,232, 자부담 440)
 - 여성농업인 10,817명, 여성어업인 183명
 - * '26년 시·군 수요조사에 따라 인원 배정(시·군 배정 인원 변경 가능)
 - ※ 시군비 추가 편성하여 지급 가능 (자부담분 시군 부담 및 바우처 추가 지원 등)
 - ⇒ 시군비 추가하여 지급하는 경우 NH농협은행 시군지부와 협의하여 카드 발급(NH농협은행 경기본부 협의)
- 지원방법 :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시·군(읍·면·동)에서 대상자 확정 후, 자부담금 수납 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2. 사업 신청자격(아래 자격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2006년생) 여성농어업인(신청 : 거주지 기준)
 - 농업인 여부는 농업경영체등록증명, 농지대장 확인(1차), 추가 판단이 필요한 경우 농업인확인서 발급 및 선정협의회에서 농업인 여부 재확인(2차)
 - * 실거주지는 경기도, 농사는 타 시도에서 할 경우, 관련 서류 타시도에 확인 후 전업농일 경우 지급
 - 어업인 여부는 어업경영체등록증명 또는 어업인 확인서로 확인
- 전업농어가의 여성농어업인(건강보험 직장가입자·농림,어업,축산업 외 타 직종 종사자 제외)
 - 부부 모두 전업농어업인(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제외)이어야 하며,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농림, 어업, 축산업 외 타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여부 확인)
 - ** 사업자등록증(국세청 업종분류에 따른 농림, 어업, 축산업 종사 여부 확인)을 통해 확인
- 유사 복지서비스를 수혜받고 있지 않은 자
 - 문화바우처 농촌기본소득(연천군), 농어민 기회소득 대상자 중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 중복 미지급*
 - * 기준 :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 전년도('25년) 수혜자
- 농어가당 1인 신청(농어가 내 중복지원 불가)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세대주명, 주소)을 통해 농어가당 1인 신청 여부 확인

3. 사업추진 절차(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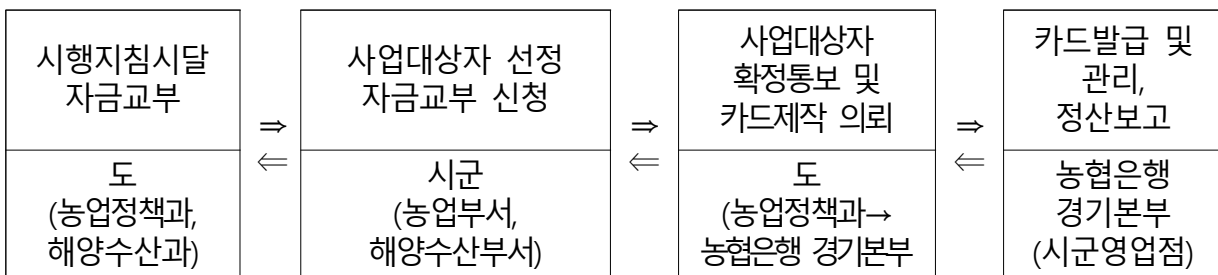
지침 시달 '26.1.	【도】	○ 사업지침 시달 【도 → 시·군 → 읍·면·동】
↓		
사업홍보 '26.1. ~ 2.	【시·군】 【읍·면·동】	○ 홍보대상 : 여성농어업인 및 여성농업어업인단체 ○ 홍보방법 : 통·리장 및 어촌계 회의, 현수막 및 안내문 게시 시·군(읍·면·동) 홈페이지 게시, 지역신문, 지역방송, 보도자료 배포
↓		
신청자 접수 '26.1. ~ 2.6.	【읍·면·동】	○ 참여 희망 여성농어업인이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제출
↓		
대상자 선정심사 및 보고 '26.2.6. ~ 2.24.	【읍·면·동】	○ 「여성농어업인 행복마우처 선정협의회」 구성·운영하여 (읍·면·동)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결과 보고 【읍·면·동 → 시·군 → 도】
↓		
대상자 확정통보 '26.2.27.	【시·군】	○ 대상자 확정통보 : 도 → 시·군 → 읍·면·동 → 여성농어업인 도 → 시·군 → 농협 시군지부
↓		
보조금 교부 '26.3.6.	【도, 시·군】	○ 보조금 교부 신청 【시·군→ 도】 ○ 보조금 교부 【도 → 시·군 → 관내 농협은행 시군지부】
↓		
사업 시행 '26.3.16. ~ 12.31. *카드발급 : 3.16일(예정) 농협 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시·군】 【시·군 농협】	○ 행복마우처 카드 신청·발급 【농협은행 시·군지부】 - 신청 : 여성농어업인→읍면동→농협은행 시·군지부 - 발급 : 개인별 배부된 카드번호 관리(신청 역순) * 사업대상자 자부담금(4만원)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납부 ○ 행복마우처 카드 관리 - 월별 사용잔액 통보 【농협은행 경기본부→도 → 시·군】 - 월별 사용 독려 【시·군→ 읍·면·동→ 여성농어업인】
↓		
사업 정산 '27. 1. 31.	【시·군 농협】 【시·군】	○ 행복마우처 카드 사용액 보고 및 정산 【농협은행 시·군 지부 → 시·군, 여성농어업인】 ○ 행복마우처 카드 도비 정산 【시·군 → 도】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경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4. 기관별 역할

- 경기도 : 시행지침 시달, 시·군 자금교부, 사업지도·감독
- 시·군 : 세부시행계획 수립, 사업홍보, 지원대상자 확정, 읍·면·동 지도·감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정산보고 등
- 읍·면·동 : 사업홍보, 지원 신청서 접수, 지원대상자 선정, 행복바우처 카드 사용실적 점검 및 사용독려 등 각종 안내·지원
- NH농협은행
 - 경기본부 : 카드 발급·관리, 사업비 집행보고, 정산보고
 - * 매월 카드발급현황 및 사용 현황 통보(농협은행 경기본부 → 도 → 시군통보)
 - 시군지부 : 카드발급(재발급), 정산보고

(기관별 역할 요약)



5. 사업대상자 신청 및 선정

가. 신청접수 【 여성농어업인 → 읍·면·동 】 : '26. 1. ~ 2. 6.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읍·면·동장은 신청서(별지 1호) 기재 내용, 주소지에 실거주 및 신청자 서명·날인 여부 확인
 - **건강보험가입내역 조회(자격득실확인서) 및 농어업분야 종사 여부 확인(사업자등록증)**
 - * 부부(여성농어가주 제외) 모두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행정기관이 위임하여 발급받을 시 별지4 위임장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 제출
 - **대리신청의 경우 배우자 및 직계가족만 인정,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필수**
 - * 방문신청 시 준비물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전업농어업인 여부 확인 요령 》

① 공통절차

- (농업) 농업경영체등록증 및 농지대장 확인을 통해 농업인 여부 확인
- (어업) 어업경영체등록증 및 어업인확인서를 통해 어업인 여부 확인
- 자격득실확인서에 따라 배우자 직업 또는 여성농어업인 전업적 직업 여부 확인

② 직장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인 경우)

- ⇒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 자녀 직장의 피부양자격 가입자의 경우 가능

③ 지역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확인 후 농림어업축산식품 분야 종사자가 아닐 경우 대상 제외

나. 심사표 작성 【 읍·면·동 】

- 읍·면·동장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선정 기준표(별표2, 별표2-1, 별표2-2, 2-3)에 준하여, 심사표(별지5호) 작성
- * 연령, 거주지, 여성농어업인단체 활동, 사업자등록여부, 농어업교육이수 등 확인

《 여성단체 확인방법 》

- 해당 단체 : 한국여성농업인 경기도연합회, 생활개선 경기도연합회, 농가주부모임 경기도연합회
- ※ 어업 :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경기남부분회, 경인북부분회)
- 확인 방법 : [시·군] 한여농 시군지부, 농업기술센터, 농협 시군지부 등에 회원여부 확인
- ※ 어업 :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경기남부분회, 경인북부분회)

다. 사업 대상 심사 【 읍·면·동 】

- 읍·면·동장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선정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정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선정협의회 》

- 목 적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자 선정
- 구 성 : 7인 이내(위원장 : 읍·면·동장)
 - 읍·면·동장, 사업담당팀장, 여성농어업인단체장, 이·통장, 한여농 등 회원, 농업인, 어업인 등
- 운 영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필요시 개최(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 가능)
- 심의내용 :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배점표)을 면밀히 검토
- 심의의결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출석)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선정 우선 순위

① 소규모 농어가

② 여성 농어가주(농어가당 여성농어업인 1인 지원)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세대주명, 주소)에서 농어가당 1인 신청확인

③ 농어업교육이수자(최근 3년)

* 공인된 기관에 한함

- (농업)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수산식품연수원, 경기도농업기술원, 사군 농업기술센터, 농업마이스터 대학,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등

- (어업)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경기도귀어학교, 귀어귀촌지원센터, 어촌특화지원센터,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 기타 지역농협 및 수협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의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선정자 자진포기 등 대응하기 위해 사업량의 10% 이내 예비 순위 선발

《 참 고 사 항 》

시·군 실정을 반영하여 기 선정자 후순위 배정, 전년도 카드 미사용자 패널티 적용 추가 가능

6. 선정자 통보 【읍·면·동 / 시·군】 : '26. 2. 24 ~ 27.

○ 시장·군수는 도에 선정현황 보고(별지 제6호) / '26. 2. 24.

* 선정현황 보고시 사업대상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대사 철저

○ 대상자 확정 통보 (도→ 시·군 → 읍면동 → 선정자) / '26. 2. 27.

○ 시장·군수는 농협 시군지부에 통보 및 보조금 교부 신청

7. 카드 발급 및 수령 【여성농어업인 → 읍·면·동】 : '26. 3. 16.까지

○ (여성농어업인) 읍·면·동을 방문하여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신청서」 (별지2)를 작성하고, 자부담(4만원) 납부

○ (읍·면·동) 농협은행 시군지부 방문 일괄 신청, 카드발급 완료시 카드수령 및 선정자에게 배부

○ (농협은행 시·군지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및 교부
- 개인별로 교부된 카드번호를 기재 한 최종 명단(별지7) 송부

8. 행복바우처 카드 사용

가. 사용범위 : 50개 업종 ※ 별표 3 사용업종 참조

- 건강식품·의료기기, 한약방, 안경점 등 보건 분야
- 미용실, 미용용품, 영화관, 공연(전시)장, 놀이공원, 농기계수리점 등
- 스포츠센터, 운송업(고속버스 등), 관광업(여행사, 민박 등) 등

나. 카드사용 안내사항

- 카드 사용 지역(제한없음)
- 카드 도난·분실 시, 재발급 가능(최초 발급 농협은행 시군지부에서만 가능)
(※ 단, 신고지연에 따른 분실 카드 사용 피해는 보상하지 않음)
- 유효기간(2026.12.31) 내 미사용 시, 연장 사용 불가
- 문자전송서비스(SMS) 기능 제공(*개인이 서비스 신청한 경우만 가능)
- 자부담 우선 사용 원칙에 따라 정산

※ 카드잔액 확인

- NH농협카드 고객센터 : 1644-4000 ※기프트카드 단축번호(7번) > 잔액조회(1번)
- NH농협카드 홈페이지 및 NH PAY 스마트앱 기프트카드 확인

1. 사업비 집행체계

- 시·군(읍·면·동) : 소요액을 파악하여 도에 제출
- 道 : 시·군 자료 확인 후, 시·군에 자금 교부(소요액 일괄교부)
- 시·군 : 농협은행(시·군지부)에 사업비 교부
- 농협은행(시·군지부) : 신청자로부터 자부담액 수납 후, 카드 교부

2. 사업비 추진실적 보고 및 집행

가. 보조금 교부

- 경기도는 각 시·군에 도비를 배정하고(일괄교부), 시·군에서는 관할 농협은행(시·군지부)에 교부
* 교부요청시 : 붙임 별지 4 서식 참고

나. 추진실적 보고

- 농협은행 경기본부는 추진실적을 도지사에게 매월(10일까지) 보고(별지 9호)
- 도 → 시군 통보 → (시군) 실적확인 및 (농어업인) 카드 사용 독려

다. 사용실적 점검

- 시장·군수(읍·면·동장)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관리대장(별지10)작성 등 관리·점검 실시(분기 1회)
- 시장·군수(읍·면·동장)는 매월 개인별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미사용자 및 사용실적 저조한 자에게 사용 독려(전화 또는 문자)

3. 사업비 정산

가. 정산자료 작성

○ 자부담 우선 사용 원칙 적용

- 정산일은 '26.12.31.일을 기준으로 하고, 정산일 이전 개인에 대한 행복
바우처 카드 사용잔액 반납 불가
- 사용액이 자부담 미만일 경우, 자부담 범위에서 개인에게 우선 반환
- 나머지 잔액은 시장·군수에게 반납

《 사업비 반납 예시 》

1. 사업대상자 A가 3만원을 이용한 경우 (사용액 자부담 미만)

: 1만원 개인에게 반환 후, 나머지 금액 16만원 도 및 시군 부담비율에 따라 반납
⇒ 16만원 x 30% = 4.8만원(도 반납), 16만원 x 70% = 11.2만원(시·군 반납)

2. 사업대상자 B가 14만원을 이용한 경우 (사용액 자부담 이상)

: 자부담 우선원칙에 따라 4만원은 자부담으로 모두 사용한 것이므로, 나머지 금액 6만원 도 및 시·군
부담비율에 따라 반납
⇒ 6만원 x 30% = 1.8만원(도 반납), 6만원 x 70% = 4.2만원(시·군 반납)

나. 정산자료 보고 ('27년 1월)

- 농협은행 시·군지부는 연간 추진실적 및 개인별 카드사용실적 등 정산
자료를 시장·군수에게 보고(별지11호)
- 시장·군수는 연간 추진실적 및 정산자료를 도지사에게 보고(별지 12호)
- 부당신청으로 판명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의 책임은 시장·군수에게 있음

- 사업 참여 희망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홍보 철저
 - 홈페이지 게시(도, 시군), 농민단체 홍보, 농어업인 교육이나 간담회 및 각종 회의자료 제공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서 접수 : '26. 2. 6.까지
- 행복바우처 선정자 명단 확정보고 및 대상자 통보 : '26. 2. 27.까지
-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농협) : '26. 3. 16.까지(변경 가능)
 - * 통상 선정대상자 확정 및 카드제작 의뢰 후 농협 시군지부 배송까지 최소 2주 이상 소요
- 농협은행 경기본부는 매월 추진실적을 도지사에게 제출 : 익월 10일까지
- 시장·군수는 정산자료를 도지사에게 보고 : '27. 1. 31.까지

< 별표1 > 농업인의 범위

1. 농어업의 개념

구 분		내 용	관련규정
농 업	1. 농작물 재배업	식량작물·채소작물·과실작물·화훼작물·특용작물·약용작물·버섯·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2. 축 산 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3. 임 업	영림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및 임산물 생산 채취업	
어 업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산업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마목

2. 농업인의 범위

구 분	대 상 자	근 거
농업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p>－ 농업인 확인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한다.</p>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 제5호

3. 어업인의 범위

구 분	대 상 자	근 거
	<p>"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p>	<p>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p>
어업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업·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p>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 ~ 제4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어업 경영주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경영주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사람 	<p>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 제1호</p> <p>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 제1호</p>

< 별표2-1 > (농업인)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선정기준표

구 분		세부 심사항목		배점	
총 계		100점 만점			
기본 항목	여성농업인 (신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영체등록 등재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2-57호) 참고 ○ 실제 영농에 종사 			
	전업농가의 여성 농업인, 배우자 사업자등록 등 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업이나 겸업 여부(부부 2인 모두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 확인 및 건강보험 가입 여부 확인 * 붙임 5.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11조의 10 참고 * 자녀 직장의 피부양자격 가입자의 경우 가능 			
	농가당 1인 신청	○ 농가주 및 세대주 성명 확인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주소 확인			
	여성농업인 (신청인) 연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 상 나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20세 이상 (2006년생부터~) 			
	유사 복지서비스 중복 수혜 제외	○ 문화누리카드 등			
점수	여성농가주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본인이 여성농가주인 경우(단독여성농업인) ○ 신청인이 농가원인 경우(부부 농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점 ○ 20점 	
	영농규모 (소유+임차) *임차(농민기본소득의 임차농 지급 대상자)	일반농업	시설농업(채소, 화훼, 특작류 등)		
		0.5ha 미만	유리온실 100평 및 비닐온실 300평 미만		○ 50점
		0.5ha~1ha 미만	유리온실 300평 및 비닐온실 600평 미만		○ 45점
		1ha~1.5ha 미만	유리온실 400평 및 비닐온실 900평 미만		○ 40점
		1.5ha~2ha 미만	유리온실 500평 및 비닐온실 1200평 미만		○ 35점
		2ha~3ha 미만	유리온실 600평 및 비닐온실 1,500평 미만		○ 30점
		3ha~4ha 미만	유리온실 700평 및 비닐온실 1,800평 미만		○ 25점
		4ha~5ha 미만	유리온실 800평 및 비닐온실 2,100평 미만		○ 20점
	5ha~	유리온실 900평 및 비닐온실 2,100평 이상		○ 15점	
항목	농업교육이수자 * 최근 3년 (2023~202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된 기관의 교육이수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시간 이상 - 9시간 이상 ~ 24시간 미만 - 8시간 이하 * 농수산식품연수원, 경기도농업기술원, 사군 농업기술센터, 농업마이스터 대학,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등 기타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 * 축산업등록 관련 의무교육은 가점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점 ○ 12점 ○ 7점 	
	여성농업인단체 회원 * 최근 5년 (2021~2025년)	○ 여성농업인단체 활동 경력		○ 2점	

< 별표2-2 > (축산인)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선정기준표

구 분		세부 심사항목			배점
총 계		100점 만점			
기본 항목	여성농업인 (신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업등록(허가) 등재 여부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2-57호) 참고 ○ 실제 영농(축산업)에 종사 			
	전업농가의 여성 농업인, 배우자 사업자등록 등 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업이나 겸업 여부(부부 2인 모두 확인) - 사업자등록 확인 및 건강보험 가입 여부 확인 ※ 붙임5.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11조의 10 참고 * 자녀 직장의 피부양자격 가입자의 경우 가능 			
	농가당 1인 신청	○ 농가주 및 세대주 성명 확인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주소 확인			
	여성농업인 (신청인) 연령	○ 주민등록 상 나이 - 만 20세 이상 (2006년생부터~)			
	유사 복지서비스 중복 수혜 제외	○ 문화누리카드 등			
점수 항목	여성농가주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본인이 여성농가주인 경우(단독여성농업인) ○ 신청인이 농가원인 경우(부부농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점 ○ 20점
	영농규모 (소유+임차) *임차(농민기본소득의 임차농 지급 대상자)	한우·젓소	돼지	닭	
		10두 미만	1,000두 미만	1만수 미만	○ 50점
		10~25두 미만	1,000~1,400두 미만	1만~2만수 미만	○ 45점
		25~50두 미만	1,400~1,800두 미만	2만~3만수 미만	○ 40점
		50~60두 미만	1,800~2,200두 미만	3만~4만수 미만	○ 35점
		60~70두 미만	2,200~2,500두 미만	4만~5만수 미만	○ 30점
		70~80두 미만	2,500~2,700두 미만	5만~6만수 미만	○ 25점
		80~90두 미만	2,700~2,900두 미만	6만~7만수 미만	○ 20점
	90~100두 미만	2,900~3,000두 미만	7만~8만수 미만	○ 15점	
※ 기타 가축(양봉, 곤충등) 시군 특성에 맞게 배점 규모 조정 가능					
농업교육이수자 ※ 최근 3년 (2023~202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된 기관의 교육이수증 - 24시간 이상 - 9시간 이상 ~ 24시간 미만 - 8시간 이하 ※ 농수산식품연수원, 경기도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마이스터 대학,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등 기타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 ※ 축산업등록 관련 의무교육은 가점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점 ○ 12점 ○ 7점 	
여성농업인단체 회원 ※ 최근 5년 (2021~2025년)	○ 여성농업인단체 활동 경력			○ 2점	

< 별표2-3 > (어업인)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선정기준표

구 분		세부 심사항목	배점	
총 계		100점 만점		
기본 항목	여성어업인 (신청인)	○ 어업경영체등록 또는 어업인 확인서 여부 ○ 실제 영어에 종사		
	전업어가의 여성 어업인, 사업자등록 등 유무	○ 부업이나 겸업 여부(부부 2인 모두 확인) - 사업자등록 확인 및 건강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자녀 직장의 피부양자격 가입자의 경우 가능		
	어가당 1인 신청	○ 어가주 및 세대주 성명 확인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주소 확인		
	여성어업인 (신청인) 연령	○ 주민등록 상 나이 - 만 20세 이상 (2006년생부터~)		
	유사 복지서비스 중복 수혜 제외	○ 문화누리카드 등		
점수 항목	여성 어가주 우대	○ 신청인 본인이 여성어가주인 경우(단독여성어업인) ○ 신청인이 어가원인 경우(부부어업인)	○ 30점 ○ 20점	
	어업 규모 등	구분	규모 등	
		소규모	5톤이하(연안 및 구획어업)	○ 50점
			해면(맨손어업, 나잠어업)	
			내수면(신고어업)	
		그외	해면어선어업(5톤이상) 및 해면양식	○ 45점
			육상양식(해수, 내수)	
	내수면(어업허가)			
		종자생산		
		※ 대상자가 예산범위 초과시, 고령 여성어업인 순 등 기타시군 특성에 맞게 배점 규모 조정 가능		
어업교육이수자 ※ 최근 3년 (2023~2025년)	○ 공인된 기관의 교육이수증 - 24시간 이상 - 9시간 이상 ~ 24시간 미만 - 8시간 이하 ※ 공인된 기관에 한함(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농수산식품연수원,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경기도귀어학교, 귀어귀촌지원센터, 어촌특화지원센터, 한국 어촌어항공단 등)	○ 18점 ○ 12점 ○ 7점		
여성어업인단체 회원 ※ 최근 5년 (2021~2025년)	○ 여성어업인단체 활동 경력	○ 2점		

< 별표3 >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사용 업종표(50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업종코드)	
총 계		총 50개 업종	
의생활	신변잡화(1)	안경점	1204
식생활	휴게음식점(1)	커피전문점	2003
		일반음식점 (7)	한식
	일식		2102
	중식		2103
	양식		2104
	부패		2105
	패밀리레스토랑		2107
	기타음식점		2199
	식음료품(1)	건강식품점	2204
유통	농협판매장(2)	농기계수리점	4113
		하나로클럽	4110
		하나로마트	4111
여행	숙박 (5)	특급관광호텔	5501
		일반관광호텔	5502
		기타관광호텔	5503
		펜션/민박	5504
		기타숙박업	5505
	운송수단 (3)	항공사	5601
		고속버스	5602
		철도	5603
	관광여행(2)	관광여행사	5701
관광기념품점		5702	
레포츠 문화 취미	레저/스포츠 (11)	스포츠용품점	6001
		레저용품점	6002
		테니스장	6006
		볼링장	6007
		스키장	6008
		수영장	6009
		기타레저업소(수목원, 주말농장 등)	6099
		종합스포츠센터	6010
		놀이공원	6012
		레포츠클럽	6013
		요가	6016
	문화/취미 (7)	영화관(인터넷쇼핑몰제외)	6101
		공연장/전시장(인터넷쇼핑몰제외)	6102
		경기장	6103
		서점(인터넷 서점제외)	6106
		화방	6108
		화원	6109
		음반판매점	6117
	의료 미용	의료기관/제약(2)	의료기기 및 용품
한약방			7006
미용(5)		미용원	7102
		피부미용원	7103
		찜질방/목욕탕/사우나	7104
		화장품	7105
미용재료	7106		
교육	학원(2)	예체능계학원	7702
		기타학원	7799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세요 !

경기도에서는 여성농어업인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은 ?

-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
- ☞ 농어가당 여성농어업인 1인 지원(농어가 내 중복지원 불가)
- ☞ 부부 모두 전업 농어업인이며, 직장명의 보험가입이 되어있지 않아야 합니다.
- 단, 사업자 등록이 있는 자 중 별도 자영업이 아닌 농어업의 원활한
경영을 위해 농림어업 관련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가능

○ 행복바우처는 무엇인가요 ?

- ☞ 영화관, 미용원, 안경점, 찜질방,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연간 20만원 / 자부담 4만원) 지원

○ 행복바우처 신청 준비물은 ?

- ☞ 여성농어업인 본인과 배우자의 신분증, 도장
- ☞ 농어업교육 이수증(해당자에 한함)
-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 상세한 사항은 읍·면·동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연 령	만 세
	주 소	※ 도로명주소 기재하되, 읍면동 기재			겸업 여부	
	연락처 (휴대폰)	※필수				
	여성농어업인 단체활동여부	※단체명기재		농어업 등 교육이수	※교육기관명 기재 교육이수증 제출	
배우자	성 명		생년월일	-	겸업 여부	
농어주 성 명		주민등록 세대주 성명		여성농어가 주여부	농어당인 신청 여부	
영농 규모 (소유)	농지소유 면적	ha				
	양축규모	소/	돼지/	닭/	기타/	
<p>1. 본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예 : 실제 영농어업종사여부, 문화바우처, 농촌기회소득(청년귀농,친환경) 등 유사복지 중복 수혜 등)</p> <p>2. 본인은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카드 발급·관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에 따라 자격조건 확인과 관련한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조회·활용에 동의합니다.</p> <p>3.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자 선정 시, 행복바우처 카드 정액의 20%를 자부담하겠습니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년 월 일 <div style="text-align: right;"> <p>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배우자 : (서명 또는 인)</p> </div> </div>						
개인정보 조회·제공·이용 동의사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당해 읍면동, 사군청, 농협 사군 지부, 세무서				
	조회·제공·이용 목적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카드 발급대상자 확정 및 관리				
	개인정보 항목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번호, 영농어규모, 사업자등록 여부, 전화번호 등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26. 1월 ~ 2028.12.31. <보유기간 경과시 파기>				
<p><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p> <p>※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단 동의 거부 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p>						

※ 작성 시, 참고사항

- ① 실제 영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문화바우처 등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지원대상에서 제외
- ② 여성농어가주관? 단독 여성농어업인(미혼 또는 사별 등)
- ③ 농업규모 산출 시, 양축인의 경우, 신청일 현재 성축 기준(새끼, 육성우는 2두를 1두로 환산)
- ④ 전산시스템 입력 관련, 우편번호 필히 기재 요망

* 부부(단독여성 포함) 모두 전업 농어업인이어야 하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어야 함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카드 신청서

본인확인	팀 원	팀 장

신청인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금액			
	연 락 처 () -	카드번호 (농협작성)	-	-

유의 사항	<input type="checkbox"/> 본 카드의 유효기간은 2026년 12월 31일이며, 유효기간이 경과된 카드는 사용하지할 수 없습니다. <input type="checkbox"/> 본 카드는 분실·도난시 재발급이 불가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input type="checkbox"/> 본 카드는 한약방, 목욕탕, 놀이공원, 안경점, 미용원, 영화관, 공연장·전시장, 화장품, 미용재료, 서점(인터넷 서점 제외), 농협하나로마트, 스포츠레저 용품, 경기장, 회원 등 경기도에서 별도로 지정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

본인은 NH선불카드 약관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고객 성명 : _____ (날인 또는 서명)

※ 기입하신 정보는 본인확인용으로 사용됩니다.

※ 타인의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관련법률 : 주민등록법 제 37조(벌칙)」

<절 취 선>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카드 본인 부담금 납입 확인서

성명		카드번호	-	-	-
----	--	------	---	---	---

상기 고객님의 『경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카드』 수령을 위해 본인 부담금 4만원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년 월 일

NH농협은행

지부



위 임 장

농협은행

지부(점) 귀중

팀 원	책임자
공란 (농협)	공란 (농협)

대 담 리 당 인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본인과의 관계	여성농어업인 행복마우처 담당자				
위 임 내 용	위 임 내 용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마우처카드 발급							
<p>본인이 귀행 ()시·군지부와의 거래를 위해 위 내용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6년 월 일</p> <p>■ 사업자 등록번호 :</p> <p>■ 연 락 처 :</p> <p>■ 읍면동명 : (직인)</p>								
<table border="1"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인감 및 실명확인</td> </tr>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성명</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인)</td> </tr> </table>					인감 및 실명확인		성명	(인)
인감 및 실명확인								
성명	(인)							

※ 담당자가 대리로 카드수령 시 공무원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호 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26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2. 교부신청자 : 농협은행 00지점
3. 교부 내용 : 2026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4. 사업기간 : 2026. 1. ~ 2026. 12.
5. 행복바우처 카드 소요 경비

(단위 : 천원)

구 분	카드수량	총소요액	도비	시군비	자부담
여성농어업인행복바우처카드					

6. 신청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소 요 액				비고
	예산액	기교부	금 회 신청액	잔액	
계	0	0	0	0	
여성농어업인행복바우처카드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농협은행 00 지점

○○시장·군수 귀하

※ 별첨 : 통장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별지 제7호 서식] -- 제출 서식(엑셀서식 활용)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선정자 명단

(시군 → 도 → 농협은행 경기본부)

연 번	순위	시 군	읍면동	성 명	주민등록 번호	비 고
지 원 선정자 : 총 00명						

※ 사업대상자 선정 제출서식은 개인정보 최소화(성명, 주민등록번호, 시군) 구분만 대사 철저히 기재

[별지 제12호 서식]-- 제출 서식(엑셀서식 활용)

대상자 변경(수정)신청서

수신 : 경기도 농업정책과, 농협은행 경기본부

□ 신청내용

시군	읍면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내용	변경 前	변경 後

<붙임 1>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시행 2022. 7. 2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57호, 2022. 7. 27.,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044-201-151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농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농업인의 확인 신청, 확인 기준, 확인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농업인 확인"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농업인임을 이 고시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 및 사무소장(이하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이라 한다)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의 농지를 말한다.

제3조(농업인 확인 신청)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농업인 확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농업인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의 관할이 다를 경우 농지 소재지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을 경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4조(농업인 확인 기준) 이 고시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업인 확인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가.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나. 「농지법」 제50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별표 1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농지대장등본을 교부받아 제출한 사람
다. 「농지법」 제20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지정 통지서를 제출한 사람
라. 「농지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마. 나목과 다목, 나목과 라목, 나목·다목·라목 및 다목과 라목에 따른 각 농지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람
 바. (삭제)

2.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가. 다음의 자와 연간 120만원 이상의 농산물(법 시행령 제5조의 농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농산물 출하·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등)를 제출한 사람

-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산지유통인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영업을 허가받거나 신고·승계한 자
- 3) 「축산법」 제34조에 따라 개설된 가축시장을 통하여 가축을 구매하는 자
-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이 고시에서 생산자단체는 이를 말한다)
- 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을 개시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자
- 6)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나.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종자·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수실류·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그 밖의 임산물 : 1천제곱미터 이상
-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제곱미터 이상
- 3) 삭제
- 4) 삭제
- 5) 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 6)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 7)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제곱미터 이상

다. 기타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

- 1)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채소·과실·화훼·특용·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묘목(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사람

2) 농지에 660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사람

3)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나 별표 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에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4)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의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5) 농지에 1천제곱미터 이상의 조경수를 식재(조경목적 제외) 생산하는 사람

6)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 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7) (삭제)

3.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1) 제1호에서 제2호까지의 농업인 충족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업인(이하 "농업경영주"라 한다)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는 예외로 하고, 농업인과 혼인한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농업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동일한 사람)

2) 1)의 농업경영주의 주소가 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이나 법 제61조의 준농촌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 또는 농촌(준농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별지 제7호서식으로 영농사실을 확인받은 사람

3) 「국민연금법」 제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단, 18세 미만 제외)

나.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의 경우에는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다. (삭제)

4.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계속 종사를 말한다)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계속 종사를 말한다)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다만, 법인의 대표와 등기이사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5조(농업인 확인 절차 등) ①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제3조의 농업인 확인 신청서 및 제4조·제11조의 관련 첨부 증빙자료를 검토(檢討)하여 농업인 확인서의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호
2. 제4조제2호가목
3. 제4조제3호가목
4. 제4조제4호

②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의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농업인 사실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4조제2호나목 및 다목
2. 제4조제3호나목

③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의 발급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확인한다.

1. 법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신청자의 농업경영정보 일치여부
2. 농업경영주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생산요소 등의 선택·사용권 또는 생산 농산물의 판매·처분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농작물재배업·축산업·임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
3.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주의 농작물재배, 가축사육, 조림·육림, 임업용 유실수재배 및 산림부산물 채취 등의 활동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제 고용되거나, 가족노동을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가. 고용노동 : 최소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노동력 제공여부(여러 명의 농업경영주에게 수일간이나 하루 중 4시간이상 연속적으로 번갈아가며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가족노동 : 최소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주민등록표에 농업경영주와 함께 가족원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노동력 제공여부(다만 경영주의 배우자로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영농사실을 확인받은 가족원)
4. 신청자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말한다)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장·통장이나 이웃주민의 의견(이웃주민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④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농업인 확인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문서(관련 증빙자료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생산자단체 등에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실여부의 확인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생산자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속하고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농업인 확인서 발급) ①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제3조에 따라 농업인 확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의 농업인 확인 방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업인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한다.

②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제3조에 따른 농업인 확인 신청서가 제4조의 농업인 확인 방법 중 어느 하나에도 맞지 않은 때에는 농업인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내에 이 고시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통지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는 발급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이 기한이 지나면 다시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④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한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이유와 연장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조에서 제6조까지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신청, 확인 기준, 확인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의 사무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다.

②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농업인의 확인 등과 관련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접수, 발송 및 등재한 날부터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자료관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전단의 서식을 전자적 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련 문서 및 등록대장 등의 보관·관리기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별도 지침으로 보관·관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이 고시에 따라 농업인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얻게 된 신청인에 관한 정보 및 관련증빙자료 등은 이 고시에 따른 업무처리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신청인의 허위증빙 자료 등) 신청인이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작성한 기술내용 또는 해당기관에 제출하거나 첨부한 관련증빙자료 등이 허위 그 밖에 부정 한 방법에 따른 것으로 판명되는 때에는 이 고시에 따른 농업인 확인은 유효하지 않 다.

제9조(개인정보조회 양식) 이 고시에 따라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이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생산자단체 등에 대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농업인 사실 확인 등과 관련하여 행하는 신청자에 관한 개인정보조회동의는 별지 제5호서식을 사용한다.

제10조(농업인 확인서를 요구하는 자 등의 준수사항) 법령이나 훈령·예규·고시·공고 등으로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농업인 기준을 적용하거나 확인하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의 장 등(소속·관할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방식 또는 다음 각 호의 공적 확인방법으로 농업인 기준의 충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이 고시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및 관 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지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토지등기부
4. 토지대장
5. 임야대장
6. 건물등기부
7. 건축물대장
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관련한 농업경영정보 등록부

제11조(농업인 확인 신청서의 첨부서류 등)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호라목 : 해당농지의 농지대장등본·토지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 중 어 느 하나를 첨부

2. 제4조제1호마목 : 각 목의 농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3. 제4조제2호가목 : 해당토지의 농지대장등본·토지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임야대장등본 중 어느 하나를 첨부
4. 제4조제2호가목3) : 가축시장의 개설·관리자인 축산업협동조합장의 확인서를 첨부(다만, 가축시장을 관할하는 축산업협동조합장이 직인으로 매매사실을 확인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할 수 있다)
5. 제4조제2호나목 : 해당산지의 임야대장등본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제1항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다만, 임차의 경우에는 서면 계약서를 첨부한다)
6. 제4조제2호나목5)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산림조합장의 확인서를 첨부
7. 제4조제2호다목 : 해당토지의 농지대장등본·토지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임야대장등본 중 어느 하나 및 해당건축물의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본 중 어느 하나를 첨부
8. 제4조제3호가목1)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9. 제4조제3호가목2)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당지역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
10. 제4조제3호가목3) : 「국민연금법」 제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의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첨부(다만, 신청자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의 가장 최근 납입고지서 또는 납입영수증·납입사실통보서 등을 제출하고 이를 통해 해당기관에서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전자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 대한 확인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1. 제4조제3호나목 : 고용계약서
12. 제4조제4호 : 고용계약서

부칙 <제2022-57호, 2022. 7. 2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나목, 제10조제1호 및 제11조제1호·제3호·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4조제1호나목의 기타충족기준 및 신청자 첨부서류

1.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는 각각의 농지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2. 「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하여 계산한다.
3. 신청자가 1996년 1월 1일 이후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만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으면 「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로 간주한다.
4. 「농지법」 제8조제1항 중 단서에 따른 농지취득에는 별표 1의 제3호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2]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기준(제4조제2호다목(3)전단 관련)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소, 말, 노새, 당나귀	2마리 이상
	착유우	1마리 이상
중가축	돼지	10마리 이상
	면양, 염소, 개, 오소리	20마리 이상
	사슴	5마리 이상
소가축	토끼	100마리 이상
가금	육용(닭, 메추리, 꿩)	1,000마리 이상
	산란용(닭, 메추리, 꿩)	500마리 이상
	기타(오리, 칠면조, 거위)	200마리 이상
기타	꿀벌	10군 이상

- 비고 : 1. 돼지의 경우에는 젓 먹는 새끼돼지를 제외하고,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개의 경우에는 그 사육기준을 2마리로 한다.
 2. 「축산법」 제2조에 따른 가축 중 위 표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가금 및 조류는 그 사육기준을 20마리로 한다.

[별표 3]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시설면적기준(제4조제2호다목(3)후단 관련)

가축사육종류	가축사육시설면적
대(大)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중(中)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소(小)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25제곱미터를 초과
가금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기타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별표 4]

농업인확인서 발급 대상 곤충사육규모(제4조제2호다목(6) 관련)

구 분	종류	수량(마리)
천 적	고치벌류, 잠자리류, 칠성풀잠자리붙이, 호리꽃등애	10,000
	노린재류, 무당벌레류, 반날개류	20,000
	진디벌류	30,000
	혹파리류	40,000
	좀벌류	200,000
	알벌류	500,000
	포식응애류	700,000
화분매개	뒤영벌류	5,000
	빨가위벌류	15,000
	파리류	120,000
	꿀벌류	10군체
환경정화	소똥구리류	1,000
	동애등애류	10,000
	파리류	120,000
식용·약용	풍뎅이류	500
	메뚜기	1,000
	꽃무지류	1,000
	귀뚜라미류	15,000
	거저리류	60,000
학습·애완	물방개류, 사슴벌레류, 하늘소류, 풍뎅이류, 나비류, 반딧불이류, 수서곤충류	500
	매미류, 꽃무지류, 노린재류, 메뚜기류, 여치류	1,000
	귀뚜라미류	15,000
	개미류	6군체
사료용	동애등애류	10,000
	귀뚜라미류	15,000
	거저리류	60,000
	파리류	120,000
기타	거미류, 지네류	500

* 상기의 곤충류중 세부 종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2에 따른다.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2의 곤충종 중 상기에 적용하기 어려운 종류는 구분에 따라 가장 큰 수량을 적용한다.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시행 2025. 4. 25.] [해양수산부고시 제2025-70호, 2025. 4. 25.,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051-773-546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어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내용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이하 "수산업기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어업인 확인"이란 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어업인임을 이 고시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이하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어업경영주"란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 또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양식업을 경영하는 사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아 경영하는 사람, 「내수면어업법」 제6조 따른 면허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염전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어업종사자"란 어업경영주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어업인 확인 신청 등) 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어업인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주소지나 어로시설 또는 양식장 등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어업인확인 신청서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첨부서류를 갖추어 방문·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지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이 다를 경우 신청지역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사업장 소재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서를 이송해야 한다.

제4조(어업인 확인) 이 고시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어업인 확인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어업인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가. 어업경영주로서 다음 각 세호의 수산물 및 소금(이하 "수산물"이라 한다)의 판매금액의 합이 연간 120만원 이상인 사람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산지 유통인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

(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의 생산자단체에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

(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을 시작한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자에게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

(4)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등록을 한 사람에게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

(5) 어촌계 매매장부 등 어촌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장부에 기록된 개인별 판매금액 또는 배분금액(단, 어촌계 매매장부에는 기재된 내용이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는 어촌계장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나. 가족어업종사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1) 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어업인 기준에 해당되는 어업경영주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2) 「국민연금법」 제9조의 지역가입자이거나 제10조의 임의가입자(「국민연금법」 제13조제1항의 임의계속가입자 중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의 지역가입자(「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의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다. 가족원이 아닌 어업종사자의 경우에는 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어업인 기준에 해당되는 어업경영주와 최근 1년 중 60일 이상 어선원 및 양식업 등 어업활동의 고용인으로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어업경영주로서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통)장 및 어촌계장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어업인 확인을 받은 사람

2. 「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의 어업인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가. 어업경영주로서 다음 각 세호의 어업에 종사한 날의 합이 연간 60일 이상인 사람

(1)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 출항·입항 신고기관에 출항·입항 신고를 하고 어업에 종사한 날의 수(일4시간 이상). 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3조에 따른 낚시어선의 출항·입항 신고일수는 제외한다.

(2)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관리실태조사서에 기록된 어업에 종사한 날의 수

(3) 어촌계 조업일지 등 어촌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장부에 기록된 어업에 종사한 날의 수(단, 어촌계 조업일지에는 기재된 내용이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는 어촌계장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나. 가족원인 어업종사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1) 「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의 어업인 기준에 해당되는 어업경영주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2) 「국민연금법」 제9조의 지역가입자이거나 제10조의 임의가입자(「국민연금법」 제13조제1항의 임의계속가입자 중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의 지역가입자(「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의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다. 가족원이 아닌 어업종사자의 경우에는 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의 어업인 기준에 해당되는 어업경영주와 최근 1년 중 60일 이상 어선원 및 양식업 등 어업활동의 고용인으로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어업경영주로서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통)장 및 어촌계장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어업인 확인을 받은 사람

3. 「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어업인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생산 및 출하·유통·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해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된 사람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생산 및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해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된 사람

제5조(어업인 확인 절차 등)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검토해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할지 결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조사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할지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관련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등록된 어업경영주의 경영정보 일치 여부
2. 어업경영주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어업면허·허가·신고를 얻어 생산 수산물의 판매·처분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어업을 경영하고 있는지
3. 어업경영주가 아닌 어업인은 어업경영주의 수산물 양식 및 포획·채취 등의 어업 활동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가족노동을 제공하거나 실제 고용되어 노동을 계속해 제공하고 있는지

가. 가족노동: 어업경영주와 최소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주민등록표에 함께 가족원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노동을 제공하는지(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를 달리 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는 별지제2호서식의 어업생산활동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며, 어업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어업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동일해야 한다)

나. 고용노동

(1) 어업생산활동종사자: 일 4시간·주 3일 이상 근무하고, 어업인 확인 신청일을 포함하여 60일 이상 연속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지(여러 명의 어업경영주에게 수일간이나 하루 중 4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번갈아가며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어업법인종사자: 어업인 확인 신청일을 포함한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지

4. 어업활동기간과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5. 현지조사 시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말한다) 또는 선적항 및 어업권을 관할하는 어촌계장·이장·통장이나 이웃주민의 의견을 듣되, 이웃 주민은 어업인으로 2명 이상이어야 함.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업인 확인 등과 관련해 제출된 문서(관련 증명 자료를 포함한다)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생산자단체 등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생산자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속하고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5조의2(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어업(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또는 양식업(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의 경영을 하는 어업인

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나.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
다.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의 허가(허가 받은 염전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금제조업을 경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라.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또는 제48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

마.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의 면허 또는 허가

사.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신고

2. 어업·양식업 경영을 통해 생산한 수산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마목의 수산물을 말한다)을 제4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한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어업인

3.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연간 60일 이상 어업 또는 양식업의 경영을 하는 어업인

4. 경영주 외 어업인은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각호에 해당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가. 제4조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어업인

나. 제4조제2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어업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법인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 신고 및 등기를 하고 같은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범위의 활동실적이 있을 것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19조의3에 따라 설립 신고 및 등기를 하고, 같은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범위의 활동실적이 있을 것

② 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증명하는 서류는 별표2와 같다.

제6조(어업인 확인서 발급)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조에 따라 어업인 확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의 어업인 확인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어업인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조에 따른 어업인 확인 신청서가 제4조의 어업인 확인 기준 중 어느 하나에도 맞지 않은 때에는 어업인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내에 어업인 확인 신청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지하고 신청서 등록대장에 반려사유 등의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어업인 확인서는 발급한 날부터 3개월까지 유효하며, 이 기한이 지나면 다시 신청해 발급 받아야 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한까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이유와 연장 기한을 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 경우 가능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서 제6조까지에 따른 어업인의 확인 신청, 확인 기준, 확인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지방해양수산청의 사무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업인의 확인 등과 관련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문서를 접수한 날과 발송한 날부터 5년간 보관·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등록대장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을 활용해 각 기관의 업무실정에 맞게 작성해 관리하되, 각 등록대장의 보관·관리기간은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련 문서 및 등록대장 등의 보관·관리기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별도 지침으로 보관·관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이 고시에 따라 어업인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얻게 된 신청인에 관한 정보 및 관련증명 자료 등은 업무처리에만 사용해야 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신청인의 거짓증빙 자료 등) 신청인이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작성한 내용 또는 해당기관에 제출하거나 첨부한 관련증명 자료 등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른 것으로 밝혀지는 때에는 발급된 어업인 확인서는 무효처리하며 이를 신청인 및 해당 어업인 확인서 요구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양식) 이 고시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어업인 확인서 발급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신청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조회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사용한다.

제10조(어업인 확인서를 요구하는 자 등의 준수사항) 법령이나 훈령·예규·고시·공고 등으로 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어업인 기준을 적용하거나 확인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은 「전자정부법」 제36

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방식 또는 공적 확인방법으로 어업인 기준의 충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어업인 확인에 필요한 관련 증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2025-70호, 2025. 4. 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어업인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 (제3조 관련)

1. 공통 제출 서류

구 비 서 류		비 고
어업 외 종사여부 확인	1. 최근 1년간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2중 택
	2. 최근 1년간 가입된 국민연금자격확인서	

비고 : 최근 1년간이란 신청일 직전월까지의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자격확인서이며, 어업활동기간(판매 및 종사실적)과 타직종 종사여부를 확인하는 것임

2. 판매실적

구 비 서 류		비 고
매매관련 증빙서류	(공통) 매수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1. 어업인 소득확인증명서(국세청발행)	1. 2 중 택
	2. 매수자와의 거래명세서 및 입금확인서	
어촌계를 통한 공동판매	1. 어촌계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로 “원본과 같음”을 어촌계장 확인 날인
	2. 마을어장내 활동일지	
	3. 어촌계 판매실적 관련 서류(세금계산서)	
	4. 개인별 배분관련 입금확인서류	
일반소비자 온라인판매	1. 어업인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통신판매업신고면제자는소 명서를 제출해야함.
	2. 택배송장 및 영수증 사본	

비고: 1. 어업경영주의 가족종사자의 경우 경영주의 총 판매 실적을 첨부 가능(가구원 1명당 120만원 이상)

2. 사본 제출 시 “원본과 같음”을 제출자의 확인 날인
3. 매매 관련 증빙서류는 수협 및 농협 등의 생산자단체 등에 위탁도 포함
4.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준 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 60일 종사실적(경영주 또는 어업종사자)

구 비 서 류		비 고
어선어업	1. 선박출입항신고사실확인서	1. 2 중 택 (원본)
	2.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어업면허	시군구가 확인한 어장관리실태조사서	시군구의 원본대조필
육상양식 등 허가 및 신고	- 어업허가 및 신고필증 (원본대조필) - 시설계획서 및 배치도 - 어업인의 연간 소득확인 증명원(국세청) 등 판매실적	사본 제출로 “원본과 같음”을 경영주 확인 날인
어업권 행사계약자 또는 종사자	1. 어업권자와의 행사계약서(사)	1. 2 중 택
	2. 어업권자의 어업활동확인서	

비고 : 1. 사본 제출시 “원본과 같음”을 제출자의 확인 날인

2.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준 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 가족종사자

구 비 서 류		비 고
경영주와 동일거주	주민등록증 등 주소 확인 증빙서류	
경영주와 다른 주소	1. 가족관계증명서	
	2. 어업활동사실확인서	

1. 조건 : 어업경영주가 어업경영체로 등록 및 가족종사자로 등록 필수

2. 비고 : 어업활동사실확인서는 어촌계장 또는 이장(통장)이 확인하고 어촌계원 또는 어업활동지역 거주 어업경영체등록 경영주 2인 확인

5. 근로계약이 체결된 종사자

구 비 서 류		비 고
공통	1.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업무내용 명시
	2. 근로계약서(고용주와 근로자의 간인날인)	
	3. 고용(근로)확인서	
어업법인근무	어업법인 등기부등본(원본)	

비고: 어업법인의 경우 최근 1년간 연속적으로 근무해야 함.